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 안전가이드라인



[www.moel.go.kr](http://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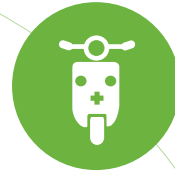
[www.kosha.or.kr](http://www.kosha.or.kr)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배달 업계에서 일하다보면 함께 근무하던 라이더들의 사고소식을 종종 접합니다. 특히나 사망사고 소식을 들을때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위험하구나를 또 한 번 느끼며 가족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 평소에 나의 안전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반성하게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보호구별 선택요령, 이륜차 점검사항 등을 참고하여 앞으로 안전한 배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에 많은 배달종사자분들이 이를 참고하여 배달 중 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지 않길 바랍니다.

△△배달대행, 윤○○ 사원

배달원을 채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로서, 배달원들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내가 해 주어야 할 부분과 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배달원에게 당부하여야 할 사항 등이 무엇일까 늘 고민했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잘 안내되어 있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달사업 시장규모의 성장에 발맞추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도 함께 성장하여 안전한 배달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 이○○ 점장

TV에서 배달원들의 사고소식을 접하면서 나오는 무관하다 생각했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보니 저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업체들도 배달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배달원들의 안전한 배달을 위해 다양한 업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읽어보고 함께 노력하길 희망합니다.

△△프로그램사, 김○○ 부장





contents



<b>제1장</b>	<b>가이드라인 개요</b>	<b>5</b>
<b>제2장</b>	<b>음식배달업의 변화 및 특성</b>	<b>7</b>
<b>제3장</b>	<b>음식업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특성</b>	<b>11</b>
<b>제4장</b>	<b>주체별 안전관리 실천방안</b>	<b>15</b>
<b>제5장</b>	<b>부록</b>	<b>25</b>
	1. 이륜차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보호구 종류 및 선택요령	26
	2. 안전운행을 위한 이륜차 점검사항	28
	3. 이륜차 운행 전 안전점검 요령	28
	4. 상황(환경별) 이륜차 안전운행 요령	29
	5. 배달종사자 관련 교통법규	31
	6. 이륜차 배달종사자 사고사례	33
	7. 이륜차 배달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한 주체별 안전점검표	34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 안전가이드라인



## 제1장

# 가이드라인 개요



## 01. 가이드라인 개요

### 1. 발간배경

#### ■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보호 요구 증가

- 최근 외식 및 음식 주문문화의 확산은 업계의 경쟁심화로 이어져 비용절감 등을 위해 배달 종사자의 근로형태가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배달대행)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

\* 음식업 배달종사자 2만여명 중 직접고용이 아닌 배달대행업체 소속은 약 1만여명으로 추산되며 갈수록 확산될 전망(한국노동연구원, '16. 7)

- 배달앱 등 편리한 음식주문 문화의 발달과 함께 음식배달업의 성행으로 빠른배달 서비스가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음식배달 중 발생하는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비정규직)와 결부되어 취약계층의 안전배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SBS 맨인블랙박스('17. 2. 5.) : “10대 아르바이트생의 위험한 배달”

KBS 추적60분('17. 3. 22.) : “2017 고객만족실태 보고 1편 죽음을 부르는 배달전쟁”

### 2. 발간목적

#### ■ 배달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주체별 역할 제시 필요

-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대국민 의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 전개
-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업계의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 촉진 및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 배달종사자의 안전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각 주체별\* 안전관리 기준 제시 필요

\* 배달프로그램사, 음식사업주, 배달대행사 사업주, 배달종사자

#### ■ 음식배달업의 특성을 고려한 재해예방 안전정보 제공 필요

- 음식배달 종사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음식배달업의 환경(고용구조 및 수익구조 등) 변화 등 최근의 음식배달업의 특성을 고려

- 대표적 사고유형, 안전관련 법령, 개인보호구 선택 요령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필요

## 제2장

# 음식배달업의 변화 및 특성



## 02. 음식배달업의 변화 및 특성

### 1. 음식배달업의 변화

#### ■ 음식배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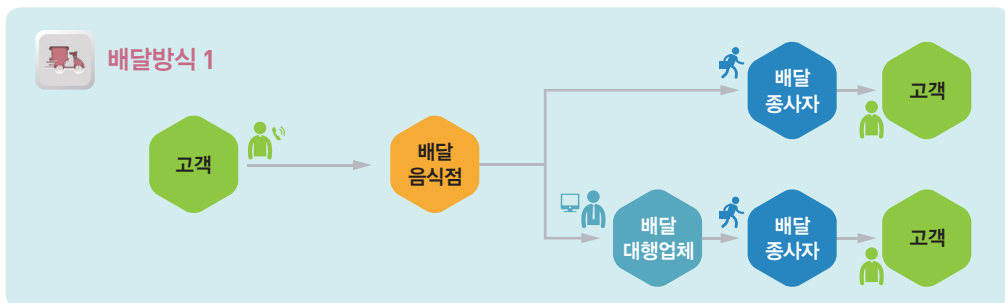
- 음식배달 업계는 프로그래머, 주문중개사, 배달대행사, 음식점(사업주), 배달종사자(기사)로 분류
  - 주로 1.5km 이내의 단거리 배달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일반 퀵(Quick) 서비스 운행과는 다름

#### | 음식배달업의 주체별 역할 |

구분	역할
고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스마트폰 앱,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음식 주문</li> <li>배달 기사를 통하여 주문 음식 전달</li> </ul>
주문앱사 (프로그래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aller ID(발신자정보표시)를 이용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제작</li> <li>고객 관리/배달 주문/매장 판매관리 및 각종 분석을 위한 내용포함</li> </ul>
음식업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의 직접적인 주문 접수 및 프로그램 관리</li> <li>고객의 온라인, 앱을 통한 주문 접수 및 프로그램 관리</li> <li>배달 대행사를 통한 주문 요청</li> </ul>
배달대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문 앱, 프로그램을 통한 배달 연결(음식점 ⇄ 배달종사자 연결)</li> <li>배달대행업체(지점)를 통한 배달 중개</li> </ul>
음식배달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폰의 배달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후 콜 수신 및 배달</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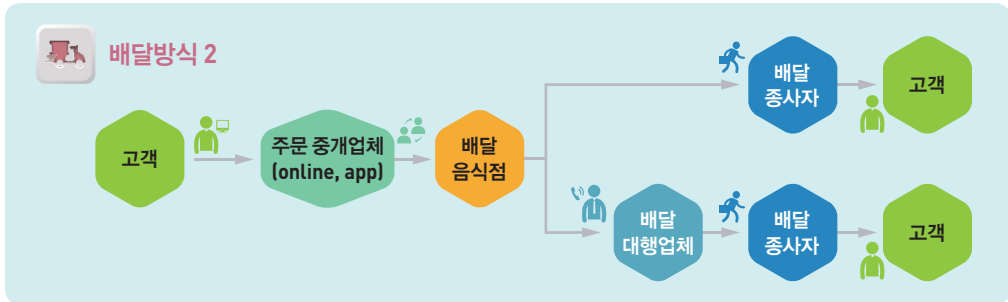
#### ■ 음식배달 방식의 변화

- 기존의 배달방식은 <배달방식 1>과 같이 고객이 직접 배달업체(음식점)에 전화로 주문, 음식점에서 고용한 배달원이 직접배달을 하거나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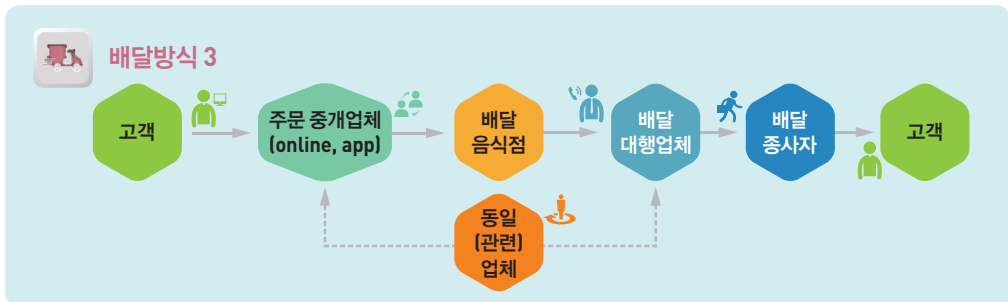




- <배달방식 2>는 가장 보편적인 배달방식으로 고객이 주문 중개업체(온라인, 앱 등)를 사용하여 음식을 주문, 배달 음식점에서 직접 고용한 배달원 또는 배달대행사를 통해 고객에게 배달



- <배달방식 3>은 고객이 배달대행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주문중개사를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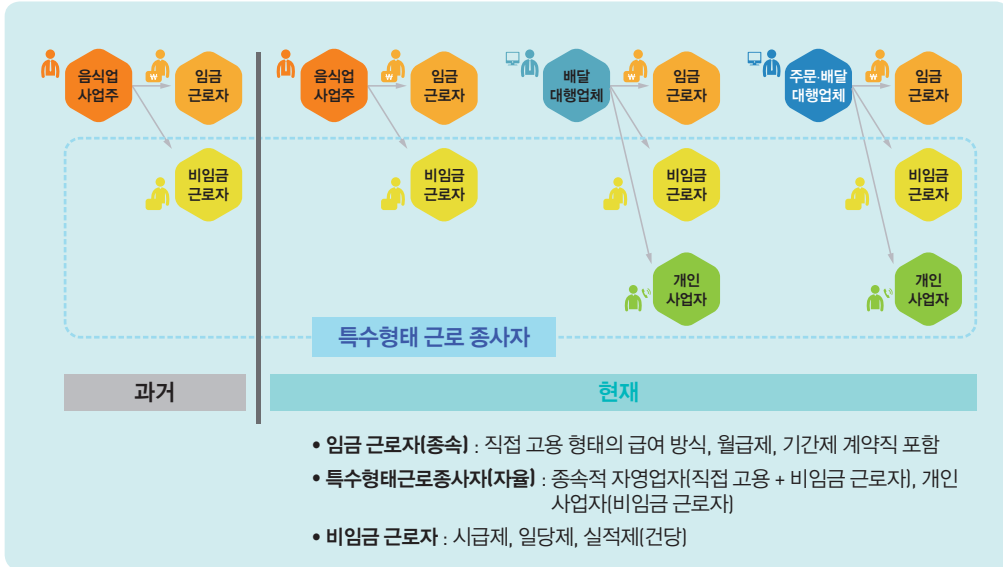
※ 업종 및 프랜차이즈, 개인운영 업체별 차이가 있음

## 2. 음식배달업의 특성

### ■ 고용 및 수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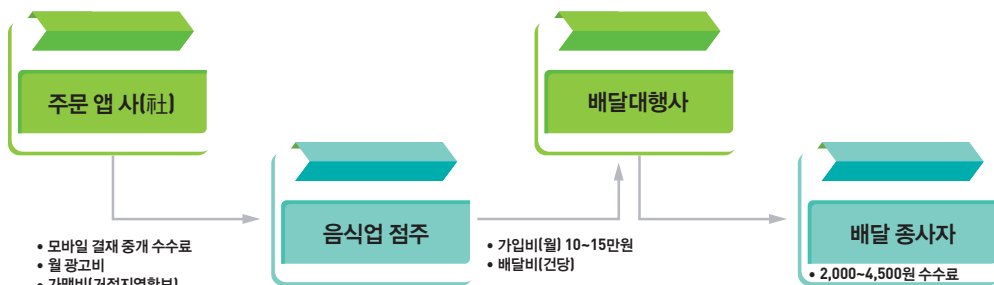
- **(고용구조)** 음식업 업종에 따라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으며, 개인 음식업 사업주는 직접 고용의 월급제와 기간제 계약직, 시급제, 일당제, 실적제(건당)를 적용
  - 프랜차이즈(피자, 햄버거, 치킨 등)는 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시급제, 실적제(건당)를 적용

### | 음식 배달업의 고용구조 변화 |



- **(수익구조)** 음식업 사업주는 주문앱사에 모바일 결제 중개 수수료, 월(月) 광고비, 가맹비(거점지역 확보)를 지불
  - 배달대행사에게는 가입비 월(月) 10~15만원, 배달비(건당)를 지불
  - 배달종사자는 음식업 사업주가 지불한 배달비(건당)의 일정 부분을 배달대행사로부터 수수료(2,000~4,500원)로 수령
  - ※ 배달종사자는 실적제(건당)를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 건당 수수료(400원~거리 적용) 적용하는 것을 선호
  - ↳ 배달종사자 중 프랜차이즈 등의 계약직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인 경우 야간근무 시 1.5배의 임금, 주휴수당 등을 수령

### | 음식 배달업의 수익구조 |



## 제3장

# 음식업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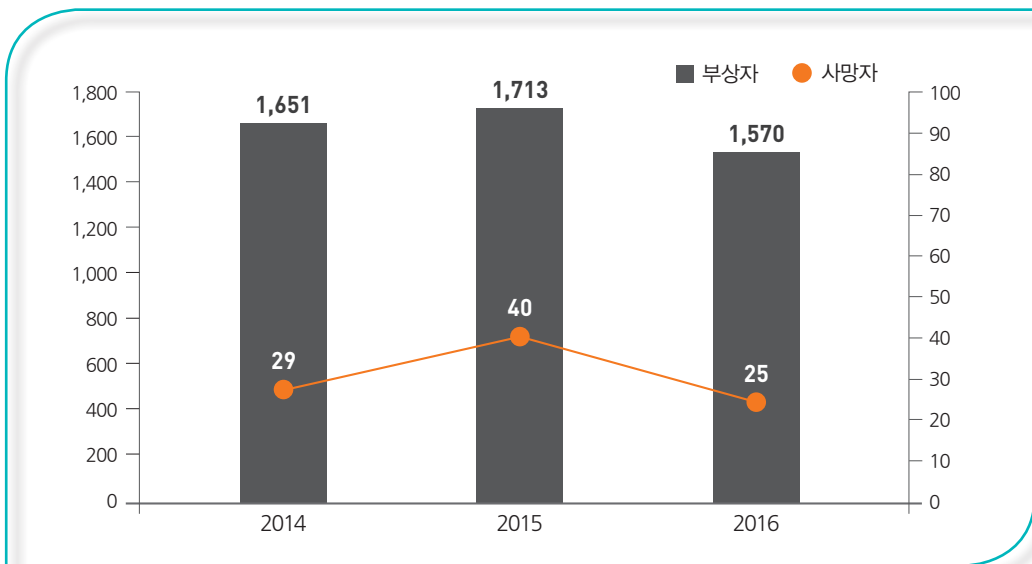


### 03. 음식업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특성

#### 1. 음식업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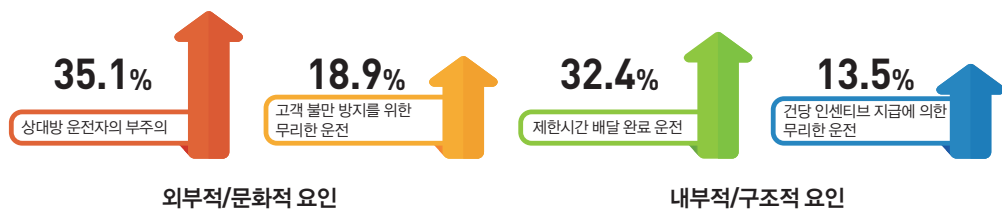
- 음식업 이륜차 사고부상자는 2014년 1,651명, 2015년 1,713명, 2016년 1,570명이 발생  
 - 사고사망자는 2014년 29명, 2015년 40명, 2016년 25명이 발생  
 ▮, 최근 3년간 평균 31명이 사망하고, 1,645명의 부상자가 발생

#### | 음식업 이륜차 사고성재해 |



-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상대방 운전자의 부주의(35.1%), 시간내 배달(32.4%), 고객 불만방지를 위한 무리한 운전(18.9%) 순으로 발생  
 (서울지역 배달아르바이트 중심, 2016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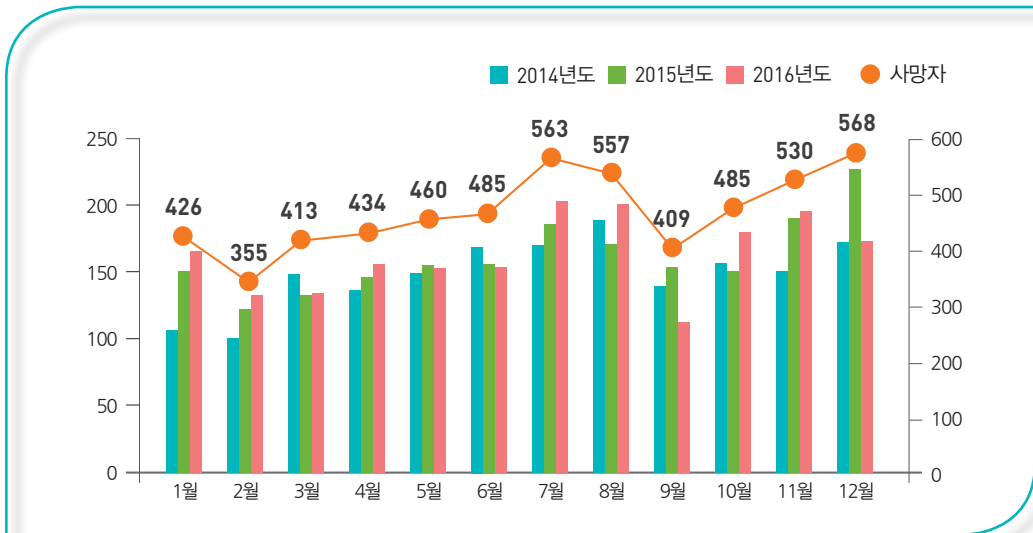
#### | 서울지역의 배달아르바이트 교통사고 원인 |



## 2. 배달재해의 특성(2012~2016년)

- **(연령별)** 20대 1,701명(30%) ⇨ 10대 1,145명(20%) ⇨ 40대 1,045명(18%) ⇨ 30대 894명(16%) ⇨ 50대 757명(13%) ⇨ 60대 이상 143명(3%) 순으로 발생
- **(발생월별)** 7~8월, 11~12월에 집중적으로 증가\*
  - \* (하절기) 하계휴가로 인한 배달주문 증가 및 기상악화(장마, 집중호우)
  - (동절기) 기상악화(폭설, 빙판길)

### | 연도별·월별 재해발생 현황 |



- **(사고사례)** 음식배달 중 계단에서 넘어짐, 이륜차 운행 시 교통사고, 노면에서의 미끄러짐 등 사고가 주로 발생

| 음식배달 종사자의 대표적인 사고 유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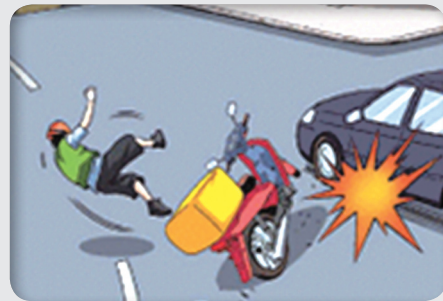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넘어짐



도로 노면의 불량으로 넘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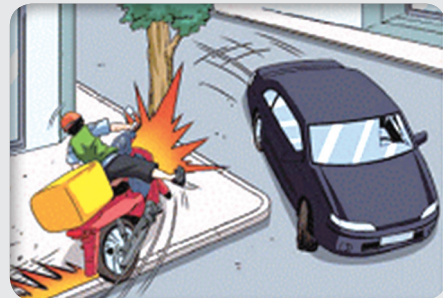
이륜차 승·하차 시 넘어짐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량과 충돌



교통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



골목 등 사각지대에서 차량 회피 중 충돌

## 제4장

# 주체별 안전관리 실천방안



## 04. 주체별 안전관리 실천방안

### 음식점 사업주



#### 1. 법적 준수사항(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교통법)

- 사업주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10호 보호구의 지급 등)**

- 사업주는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제1항 보호구의 관리)**

- 사업주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1항 탑승의 제한)**

- 사업주는 배달종사자의 무면허, 음주, 과로 시 운전을 하도록 시켜서는 안 됨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고용주등의 의무)**

#### |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안전관련 법령 |







법령	조항	내용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사업주는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의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6조 (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를 탑승 시켜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56조 (고용주등의 의무)	고용주등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2.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 산재보험, 이륜차 사고보험을 가입하여 배달업무 중 재해 및 교통사고로부터 배달종사자 보호
-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배달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이행토록 지도)
  - \*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운행 및 사고대처요령 등
- 이륜차 재해예방을 위한 슬로건, 문구, 사내 지침 및 규정 등 마련하여 게시 (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 도모)
- 이륜차 일상점검(제동력, 타이어상태, 주유 및 작동불량 상태, 안전장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정례화
  - ※ 사업주는 점검 후 이상이 있을 경우 배달금지 및 안전조치 이행
- 배달종사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무리한 시간내 배달 재촉 금지
- 배달종사자에게 안전모, 안전의복, 장갑, 부츠, 토시, 무릎 덮개, 수납케이스 등 계절·날씨를 고려한 안전보호장구 지급

### 보호구의 용도

-  **승차용 안전모**: 이륜차 사고 시 머리, 목 부분의 부상 심각도 완화
-  **보안경**: 주행 시 바람, 먼지, 오물 등으로부터 안구 보호(단, 야간 또는 시야가 불량할 경우 짙은 색상의 안경착용 제한)
-  **무릎·팔꿈치보호대**: 사고 시 다리골절, 무릎손상, 팔꿈치 상해 등 예방
-  **장갑**: 지나친 추위로 인한 동상 등 예방
-  **안전의복**: 사고 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눈에 잘 띄고 운전엔 지장은 주지 않는 것으로 선택
-  **전용가방**: 배달업무 시 흔들림이 없고 음식 무게가 분산되어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선택

• 배달종사자의 「도로교통법」 준수여부 감독 및 주지의무

- ① 이륜차 단말기 거치대의 안전을 확보(다량의 수신기 부착 및 사용금지)
- ② 배달종사자에게 배달지역의 지리적 특성(과속방지턱, 급커브구역 등)과 노면 상태에 따른 안전운행 방법 및 운행습관 관리
- ③ 날씨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날씨에 따른 운행 시 주의사항, 위험요인, 감속기준 등을 안내(필요 시 운행 제한)

| 계절적·환경적 요인에 의한 배달제한 권고사항 |

구분	상황	배달지역 제한 (최대거리 2km 기준)
비오는 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
	폭우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 100m 이내의 경우	1.5km 이내
	시간당 15mm이상, 1일 강수량 110mm 이상, 호우주의보 발령 시	1km 이내
눈오는 날	시간당 20mm이상, 1일 강수량 180mm 이상, 호우경보 발령 시	배달 금지
	눈이 2cm 미만 쌓인 경우	-
	눈이 2cm 이상 쌓인 경우	1.5km 이내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워 체인(사슬형, 직물형) 장착한 경우	1.5km 이내
	대설주의보 발령 시	1km 이내
	대설경보 발령 시	배달 금지
기타	안개, 연무, 박무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 100m 이내의 경우	1.5km 이내
	야간운전 시	-

- ※ **(호우주의보)** 6시간 70mm, 12시간 110mm 이상 강수
- (호우경보)** 6시간 110mm, 12시간 180mm 이상 강수
- (대설주의보)** 24시간 적설량이 5cm 이상
- (대설경보)** 24시간 적설량이 20cm 이상

프로그램(앱) 사 

## 1. 음식업 주문 및 배달 프로그램(앱) 구성

- 음식주문 및 배달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사는 Caller ID(발신자정보표시)를 이용  
-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기반으로 고객 관리, 배달주문 및 매장 판매관리·각종 분석을 위한 내용 포함

## 2.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을 고려한 배달프로그램 제작

- 음식배달 주문 콜(call)과 콜(call) 사이 최소시간(약 30~40분) 설정
- 고객의 배달완료 통보 전 배달종사자에게 배달 콜(call) 알림 전송금지 설정
- 배달종사자 1인당 하루 최대 음식배달 콜(call) 수신제한 설정(종사자 인당 1일 30~50건 배달, 2015 데일리 한국)
- 배달종사자의 보호구 미착용 또는 2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 적발 시 프로그램 사용제한 설정
-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일정기한 프로그램 사용제한 설정

### | 안전을 고려한 배달프로그램(예시) |



The screenshot displays a software interface for delivery management. At the top, there are tabs for '관리' (Management), '주문' (Orders), '재고' (Inventory), '데이터' (Data), '분석' (Analysis), '문자' (Messages), and '배달' (Delivery). The '배달' tab is active, showing various analysis options like '고객 분석' (Customer Analysis), '상품 분석' (Product Analysis), '배달사원' (Delivery Staff), etc.

Below the tabs, there are filters for '지역별 판매' (Sales by Region) and '지역명' (Region Name). A table shows a list of products with columns for '지 역 명' (Region Name), '기준판매건수' (Standard Sales Volume), '기준판매금액' (Standard Sales Amount), '비율' (Ratio), '대비판매건수' (Comparison Sales Volume), '대비판매금액' (Comparison Sales Amount), and '대비율' (Comparison Ratio). A red dashed line highlights a specific row.

Below the table, there are two summary boxes:

- 시간: 배달시작~배달 종료(소요시간) (Time: Start of Delivery~End of Delivery (Elapsed Time))
- 배달건수: 총 배달건수, 1시간 내 연속 배달 건수 (Number of Deliveries: Total Number of Deliveries, Number of Consecutive Deliveries within 1 Hour)

At the bottom, there is another table with columns for '매장' (Store), '매장금액' (Store Amount), '현금' (Cash), '카드' (Card), 'P 외' (Other P), '외' (Other), '전체' (Total), '총판매액' (Total Sales Amount), and '비율' (Ratio). A green box highlights a row with the text '콜 제한(최소시간 30~40분)' (Call Restriction (Minimum Time 30~40 min)) and '배달 중 콜 전달 금지' (No Call Delivery During Delivery).

**배달대행사** 

## 1. 법적 준수사항(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교통법)

- 사업주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10호 보호구의 지급 등)**
- 사업주는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 또는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제1항 보호구의 관리)**
- 사업주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1항 탑승의 제한)**
- 사업주는 배달종사자의 무면허, 음주, 과로 시 운전을 하도록 시켜서는 안 됨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고용주등의 의무)**

**|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안전관련 법령 |**

법령	조항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사업주는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의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6조 (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56조 (고용주등의 의무)	고용주등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2. 안전관리를 위한 배달대행사의 준수사항

- 산재보험, 이륜차 사고보험을 가입하여 배달업무 중 재해 및 교통사고로부터 배달종사자 보호
-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배달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이행토록 지도)
  - \*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운행 및 사고대처요령 등
- 이륜차 재해예방을 위한 슬로건, 문구, 사내 지침 및 규정 등 마련하여 게시  
(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 도모)
- 이륜차 일상점검(제동력, 타이어상태, 주유 및 작동불량 상태, 안전장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정례화
  - ※ 사업주는 점검 후 이상이 있을 경우 배달금지 및 안전조치 이행
- 배달종사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무리한 시간내 배달 재촉 금지
- 배달종사자에게 안전모, 안전의복, 장갑, 부츠, 토시, 무릎 덮개, 수납케이스 등 계절·날씨를 고려한 안전보호장구 지급

### 보호구의 용도

- 📞 **승차용 안전모**: 이륜차 사고 시 머리, 목 부분의 부상 심각도 완화
- 👓 **보안경**: 주행 시 바람, 먼지, 오물 등으로부터 안구 보호(단, 야간 또는 시야가 불량할 경우 짙은 색상의 안경착용 제한)
- 🧤 **무릎·팔꿈치보호대**: 사고 시 다리골절, 무릎손상, 팔꿈치 상해 등 예방
- 🧢 **장갑**: 지나친 추위로 인한 동상 등 예방
- 👕 **안전의복**: 사고 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눈에 잘 띄고 운전에 지장은 주지 않는 것으로 선택
- 👢 **전용가방**: 배달업무 시 흔들림이 없고 음식 무게가 분산되어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선택

• 배달종사자의 「도로교통법」 준수여부 감독 및 주지의무

- ① 이륜차 단말기 거치대의 안전을 확보(다량의 수신기 부착 및 사용금지)
- ② 배달종사자에게 배달지역의 지리적 특성(과속방지턱, 급커브구역 등)과 노면 상태에 따른 안전운행 방법 및 운행습관 관리
- ③ 날씨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날씨에 따른 운행 시 주의사항, 위험요인, 감속기준 등을 안내(필요 시 운행 제한)

| 계절적·환경적 요인에 의한 배달제한 권고사항 |

구분	상황	배달지역 제한 (최대거리 2km 기준)
비오는 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
	폭우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 100m 이내의 경우	1.5km 이내
	시간당 15mm이상, 1일 강수량 110mm 이상, 호우주의보 발령 시	1km 이내
눈오는 날	시간당 20mm이상, 1일 강수량 180mm 이상, 호우경보 발령 시	배달 금지
	눈이 2cm 미만 쌓인 경우	-
	눈이 2cm 이상 쌓인 경우	1.5km 이내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워 체인(사슬형, 직물형) 장착한 경우	1.5km 이내
	대설주의보 발령 시	1km 이내
	대설경보 발령 시	배달 금지
기타	안개, 연무, 박무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 100m 이내의 경우	1.5km 이내
	야간운전 시	-

- ※ **(호우주의보)** 6시간 70mm, 12시간 110mm 이상 강수
- (호우경보)** 6시간 110mm, 12시간 180mm 이상 강수
- (대설주의보)** 24시간 적설량이 5cm 이상
- (대설경보)** 24시간 적설량이 20cm 이상

## 배달종사자



### 1. 필수 확인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및 이륜차보험 가입 확인\*
  - \* 배달업무 중 재해, 교통사고 등에 대한 책임과 보상관계 확인
- 제한된 배달시간, 배달속도 경쟁 및 고객만족(감정노동) 등의 배달문화 인식개선 참여
- 안전교육 필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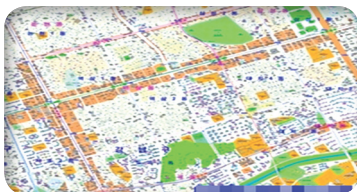
### 2.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조치사항

#### ■ 배달작업 전

- 안전수칙(교통법규, 이륜차 안전운행 등) 확인
- 이륜차 일상점검\*(제동력, 타이어, 주유, 작동 불량, 안전장치 작동 여부)
  - \* 일일점검표, 점검 체크리스트 등 활용
- 안전모 등 안전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
- 대기장소 또는 휴게장소에서의 충분한 휴식 및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
- 다량의 배달 콜(call) 수신기 부착금지 및 거치대 안전 확인

#### ■ 배달작업 시

- 목적지의 안전한 이륜차 운행동선 확인(사고다발 및 공사구간 확인)
- 바른자세 운전 및 넘어짐·미끄러짐 등 주의
- 이륜차 운행 시 배달 콜(call) 수신기, 단말기 거치대 조작금지 ⇨ 배달완료 후 콜(call) 수신



배달지역 확인



콜 수신기, 단말기 거치대



- 환경적 요인(야간, 계절 등)에 의해 배달근로 시 사업주와 상의 후 배달제한(금지)
- 교통법규 준수
  - ① 교통신호 준수, 안전거리 확보, 주행 시 시야 확보, 횡단보도 및 인도주행 금지 등
  - ② 야간운행 시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도로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운행(골목 등에서는 보행자에 유의)
  - ③ 운행 중 배달 콜(call) 수신 및 휴대전화·단말기 조작금지
  - ④ 사업주의 안내에 따른 날씨 확인, 운행 시 주의사항·위험요인 등을 주지·준수

| 계절적·환경적 요인에 의한 배달제한 권고사항 |

구분	상황	배달지역 제한 (최대거리 2km 기준)
비오는 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
	폭우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 100m 이내의 경우	1.5km 이내
	시간당 15mm이상, 1일 강수량 110mm 이상, 호우주의보 발령 시	1km 이내
눈오는 날	시간당 20mm이상, 1일 강수량 180mm 이상, 호우경보 발령 시	배달 금지
	눈이 2cm 미만 쌓인 경우	-
	눈이 2cm 이상 쌓인 경우	1.5km 이내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워 체인(사슬형, 직물형) 장착한 경우	1.5km 이내
	대설주의보 발령 시	1km 이내
	대설경보 발령 시	배달 금지
기타	안개, 연무, 박무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 100m 이내의 경우	1.5km 이내
	야간운전 시	-

- ※ (호우주의보) 6시간 70mm, 12시간 110mm 이상 강수
- (호우경보) 6시간 110mm, 12시간 180mm 이상 강수
- (대설주의보) 24시간 적설량이 5cm 이상
- (대설경보) 24시간 적설량이 20cm 이상

■ 배달작업 후

- 이륜차 상태점검 및 위험지역(공사 중, 사고발생 등)에 대한 정보공유(사업주 및 동료)
- 휴식 및 스트레칭(피로, 스트레스 해소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 부록




1. 이륜차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보호구 종류 및 선택요령
2. 안전운행을 위한 이륜차 점검사항
3. 이륜차 운행 전 안전점검 요령
4. 상황(환경별) 이륜차 안전운령 요령
5. 배달종사자 관련 교통법규
6. 이륜차 배달종사자 사고사례
7. 이륜차 배달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한 주체별 안전점검표








## 부록

### 1. 이륜차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보호구 종류 및 선택요령

#### ■ 안전모

구분	선택요령		
안전모			
보호구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륜차 사고 시 주된 신체 손상부위는 머리나 목 부분이 많으며, 머리 손상이 치명적</li> <li>안전모의 착용은 머리나 목 부분의 부상을 예방 또는 충격 완화</li> </ul>		
선택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모는 머리에 꼭 맞고 안정감을 주는 것을 선택</li> <li>턱 끈을 확실하게 매고 올바르게 착용</li> <li>사용기한에 맞추되, 파손되거나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교체</li> <li>내구성이 좋으면서 2kg 이하의 무게로 선택</li> <li>안전모를 미착용 시 탑승금지</li> <li>야간운전 시 안전모에 반사재 부착</li> <li>청력과 시력에 장애를 주지 않는 것을 선택</li> </ul>		

#### ■ 안전의복

구분	선택요령		
안전의복 (자켓, 바지)			
우비			<p>조끼</p> 
보호구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 시 찰과상 골절 등의 신체 보호 기능</li> </ul>		
선택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스팔트를 포함한 노면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의복 선택</li> <li>방한, 투습, 방수처리 기능 의복 선택</li> <li>가시성 확보를 위해 야광, 형광 등 반사판 부착 조끼 착용</li> <li>보온성이 뛰어나고 눈에 잘 띄는 것</li> <li>모든 복장은 운전이 편해야함</li> <li>프로텍터(보호대)의 탈부착 가능 의복 선택</li> <li>가벼운 무게와 적은 부피 고려하여 선택</li> </ul>		

## ■ 보안경, 장갑, 마스크

구분	선택요령
보안경	
보호구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행 시 바람이나 먼지, 오물로부터 눈 보호 및 주행 중 눈부심 예방</li> <li>• 야간 또는 시야가 불량한 경우는 짙은 색상의 안경 착용 금지</li> </ul>
장갑	
보호구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시 가장 먼저 지면에 접촉하는 부위는 손</li> <li>• 찰과상과 골절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손바닥 보호대 장갑 착용</li> <li>• 슛글러브, 롱글로브, 방한용 글로브 등 사용 목적에 맞게 착용</li> </ul>
마스크	
보호구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과 얼굴의 바람막이(보온, 방한 효과)</li> <li>• 두꺼운 제품 보다는 소재 및 무게를 고려하여 선택</li> <li>• 신축성, 내약품성, 내열성 등을 고려</li> <li>•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로부터 호흡기 보호</li> </ul>

## ■ 안전보호대(팔꿈치, 무릎 등)

구분	선택요령
안전화	
보호구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두, 운동화, 발목이 없는 신발 착용 시 넘어짐으로 인한 발목 골절, 복숭아뼈 손상 발생 가능</li> <li>• 이륜차와 지면 사이에 발이 끼는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li> <li>• 안전화는 충격으로부터 발목, 정강이 등의 신체 보호 기능</li> <li>• 뜨거운 배기관으로부터 화상예방</li> <li>• 눈으로 인한 미끄러움, 빙판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이젠 착용 또는 미끄럼 방지 부츠 착용</li> </ul>

## 2. 안전운행을 위한 이륜차 점검사항

### 이륜차 음식배달 시 위험요인 확인

- 도로교통 상태(공사 중이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지역, 급커브길 등)
- 고객의 요구, 음식상태 등으로 인한 배달시간의 제약
- 추가 배달수신(콜) 및 이륜차 운행 중 휴대폰 사용
- 이륜차의 정비 불량 및 부적절한 장비 사용
- 적재물의 불균형, 부적합한 적재함, 배달 물품(음식물)의 무게
- 폭설, 폭우, 안개 등 악천후로 인한 계절적 위험
- 부적절한 의류, 보호 의류의 부족(반사 안전조끼, 헬멧)
- 이륜차 안전운행에 대한 훈련 부족
-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감정노동 노출(공격적 또는 음주상태의 고객으로부터의 위험)
- 금전 취급(강도로부터의 위험)
- 육체적 한계(무릎, 손목 등 관절의 무리)

## 3. 이륜차 운행 前 안전점검 요령



출처: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wolfwin&folder=17&list\\_id=12777252](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wolfwin&folder=17&list_id=12777252)

- 헤드라이트의 상향등과 하향등, 전후좌우의 방향 지시등, 테일 램프, 브레이크 램프 등 주행 전 점검
- 경음기 소리 확인
- 엔진오일의 양과 오염도 체크(오일량 측정: 수평 상태의 이륜차 확인)
- 부품의 탈락 점검(운행 중 진동에 의한 나사 및 볼트 풀림 점검)
- 브레이크 레버와 페달 확인
- 엔진시동 체크
- 타이어 공기압, 트레이드면의 마모 및 손상, 이물질 부착 여부, 핑크 여부 점검

## 4. 상황(환경)별 이륜차 안전운전 요령

### ■ 계절별 운전 요령

구분	운전 요령
여름 (비내리는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갑, 헬멧,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우비의 보호 장비 필수 착용</li> <li>• 비 오는 날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급 조작 금지</li> <li>• 피부 찰과상을 줄이기 위한 긴 소매와 긴 바지 착용</li> <li>• 횡단보도나 과속 방지턱은 물론 맨홀 뚜껑, 모래, 낙엽, 전단지 등 빗물에 젖은 노면 상태 확인</li> <li>• 최대한 차체를 기울이지 않고 세워서 운전</li> <li>• 횡단보도 주변이나 앞, 뒤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봉에 주의</li> <li>• 과속 방지턱이 있는 곳에서는 서행하여 통과</li> <li>• 주유 시 방수 코팅된 바닥의 기름과 젖은 노면 주의</li> <li>• 맨홀, 유류저장고 미끄러움 주의</li> </ul>
겨울 (눈내리는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전 전 몸의 유연성을 위하여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스트레칭</li> <li>• 운전 전 조작능력 확인</li> <li>• 운전조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두꺼운 장갑 착용 피하기</li> <li>• 도로 결빙 시 운전 조작능력이 떨어지므로 가급적 주행 시간을 줄이고 운행속도는 1/3로 감속</li> <li>• 그늘진 구간이나 교량 위 등 상습결빙 지역에서는 반드시 감속운행</li> <li>• 주행 시 한곳만 바라보지 말고 넓은 지역을 바라봄</li> <li>• 커브 길에는 원심력에 의한 넘어짐 주의</li> <li>•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제동 시에는 급브레이크를 피하고 레버를 몇 번에 나누어 작동</li> </ul>

### ■ 커브운전 요령

- 커브 직전의 직선부분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임
- 커브에서는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
- 회전할 때는 핸들을 꺾지 말고 차체를 기울여서 자연스럽게 회전
- 가속그립(액셀러레이터)으로 속도를 감속

### ■ 좌회전 시 운전 요령

- 미리 도로의 중앙에 접근하여 교차로의 중심 바로안쪽을 서행
- 폭이 넓은 도로에서 좌회전 할 때는 충분한 여유를 갖고 미리 차로의 좌측으로 이동
- 갑자기 우측 차로에서 좌측 차로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

### ■ 진흙길, 자갈길 운전 요령

- 저속 기어를 사용하고 속도를 줄여 통행
- 급가속, 급제동, 급 조작 금지하고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 및 균형을 잡으면서 통행

### ■ 야간운전 요령

- 이륜차 운전자는 야간 주행 시 위험 대상 관찰이 어려우며, 자동차 운전자들은 주행하고 있는 수많은 자동차의 불빛으로 인해 이륜차 운전자의 존재를 파악하기 곤란

구분	운전 요령
이륜차 야간운전의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방의 장애물 발견이 어려우며, 속도가 빠른 경우 장애물 회피 곤란</li> <li>• 주간에 비하여 거리 판단의 정확성이 낮아짐</li> <li>• 주변의 물체들과의 거리, 움직임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li> <li>• 야간 불빛에 의존함에 따라 물체의 원근과 속도 판단 시 오류에 빠지기 쉬움</li> <li>• 야간에는 이륜차 운전자의 시선이 직선 방향에 고정되는 경우가 많아 주·정차 차량주변에서 나오는 보행자 및 사물 발견이 더욱 곤란</li> </ul>
이륜차 야간운전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 운전 시 안전모에 반사재 부착하거나 야광조끼 착용</li> <li>• 주간에 비하여 낮은 속도로 주행하고 낮선 길 주행 시 특히 주의</li> <li>• 2~3초간의 시간적 여유 운전으로 안전거리 확보</li> <li>• 사각지점을 통과 시 특히 보행자에 주의</li> </ul>

## 5. 배달종사자 관련 교통법규

### ■ 교통법규 준수

- 미등록 이륜차 운행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125cc이하 및 50cc미만 원동기를 장착한 이륜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의거 ‘차’에 속하며, 인도 주행 시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 부과(도로교통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
- 이륜차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벌점 30점, 과태료 4만원 부과
- 이륜차 속도별 위반에 따른 범칙금, 과태료, 벌점(일반도로, 보호도로)

속도(위반 시 벌점)	범칙금		과태료		벌점	
	일반	보호	일반	보호	일반	보호
60km/h 초과	8만원	10만원	좌측+1만원		60점	120점
40km/h초과 - 60km/h까지	6만원	8만원			30점	60점
20km/h초과 - 40km/h까지	4만원	6만원			15점	30점
- 20km/h까지	2만원	4만원			없음	15점

- 이륜차 사유별 과태료(주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음)

구분	일반	보호
신호지시위반	5만원	9만원
주정차위반(2시간미만)	없음	없음
주정차위반(2시간이상)	없음	없음

- 이륜차 사유별 범칙금

- 통행금지·통행제한 위반, 주정차·보행자보호(횡단보도, 일반도로) 위반 등

구분	일반	보호
통행금지위반, 통행 제한 위반	3만원	6만원
주정차위반	3만원	6만원
신호지시위반	4만원	8만원
보행자보호 위반	횡단보도	8만원
	일반도로	6만원

- 모든 차량 신호지시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횡단보도, 일반도로)에 따른 벌점

구분		일반	보호
신호지시위반		15점	30점
보행자보호 위반	횡단보도	10점	20점
	일반도로	10점	20점

### ■ 안전운전의무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 「도로교통법」제48조제1항에 의하여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됨

### ■ 안전모(헬멧) 미착용(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 안전모 착용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콜 수신 금지)

-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사용 금지(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 영상물(콜 수신) 금지(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 운전 중에는 운전자가 휴대하고 있는 영상표시장치(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재생하는 장치)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 금지(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2호)

구분	처벌	관련 법령
• 안전모(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8
• 안전운전의무 위반 시	벌점 10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범칙금 3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벌점 15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운전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범칙금	벌점 15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범칙금 4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 6. 이륜차 배달종사자 사고사례

### ■ 국내사례

- ① 2016년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의 '20분 배달제'로 인해 교통신호를 위반한 24살의 배달원이 차량과 부딪쳐 사망
- ② 2013년 고등학생이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음식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수행했으며, 같은 해 11월 A씨는 배달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척추를 다칩
- ③ 2011년 피자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A군(19세)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부딪쳐 사망
- ④ 2011년 피자 배달원 24세 청년이 신호를 위반한 택시차량에 부딪쳐 사망

### ■ 해외사례

- ① 2016년 이집트 피자배달원이 교통사고로 팔다리가 부러짐
- ② 2017.1월 싱가포르에서 음식배달 중 차량과 부딪쳐 사망
- ③ 2017.1월 인도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매장 근무 중이던 23세 배달종사자가 도로에서 차량과 부딪쳐 사망



## 7. 이륜차 배달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한 주체별 안전점검표

- 이륜차 배달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한 -

# 이륜차 운전 안전점검표(Check List)

[이륜차 배달 종사자용]

### ■ 주요 점검사항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양호	미흡
1	이륜차 면허증 소지자가 운전을 하는가?		
2	이륜차 운행전, 이륜차 각부 구조 및 기능(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가?		
3	운전 중에는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운전하는가?		
4	복장을 단정히 하고 승차용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운행 하는가?		
5	도로 바닥상태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는가?		
6	운전 중 흡연, 잡담, 휴대폰 등을 사용하지 않는가?		
7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불법운전을 하지 않는가?		
8	“눈” 또는 “비”가 오는 등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날 무리한 운전을 하지 않는가?		
9	주기적으로 이륜차 점검 전문기관 등을 통해 안전점검을 받는가?		
10	이륜차 운행 전, 배달 목적지까지의 지형, 주행동선 등을 사전에 숙지한 후, 운전을 하고 있는가?		

- 이륜차 배달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한 -

## 이륜차 운전 안전점검표(Check List)

[음식업 사업주용]

■ 주요 점검사항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양호	미흡
1	이륜차 면허증 미소지자는 이륜차 운행을 금지시키고 있는가?		
2	이륜차 운행 전, 이륜차 각부 구조 및 기능(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가?		
3	이륜차 운행에 따른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가?		
4	승차용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비를 배달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관리하고 있는가?		
5	배달종사자에게 무리한 빠른 배달을 요구하지 않고, 배달시간을 적절히 부여하고 있는가?		
6	이륜차 안전운행과 관련하여 배달 종사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7	배달종사자에게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불법운전을 하지 않도록 매일 숙지시키고 있는가?		
8	“눈” 또는 “비”가 오는 등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날 무리한 배달업무를 강요하지 않는가?		
9	주기적으로 이륜차 점검 전문기관 등을 통해 안전점검을 받는가?		
10	배달종사자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휴식가능한 시간을 부여하는가?		
11	이륜차 운행 전, 배달 목적지까지 지형, 주행동선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운행 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이륜차 배달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한 -

## 이륜차 운전 안전점검표(Check List)

[배달 프로그램(앱)사]

### ■ 주요 점검사항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양호	미흡
1	음식배달 콜과 콜 사이 최소시간을 설정·운영하고 있는가?		
2	승차용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토록 “안전운행” 메시지를 표출하는가?		
3	이륜차 배달종사자 사고예방을 위한 공익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가?		
4	배달종사자에게 무리한 빠른 배달을 요구하지 않고, 배달시간을 적절히 부여하고 있는가?		
5	배달종사자에게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안전운행 정보를 제공하는가?		
6	이륜차 안전교육 미이수, 보호구 미착용, 일정수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등이 있는 배달종사자에게 프로그램 사용이 제한되는 기능을 마련·운영하고 있는가?		
7	프로그램이 배달 종사자가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시인성 확보 및 기능 등이 반영되어 있는가?		
8	“눈” 또는 “비” 등 기상상태에 대한 정보를 배달 종사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9	배달 종사자 1인당 하루 최대 배달 콜 수신 제한을 설정·운영하고 있는가?		
10	음식배달 주문자(고객)의 배달완료 통보 전, 배달종사자에게 추가 콜 수신이 제한되는 기능이 있는가?		

- 이륜차 배달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한 -

## 이륜차 운전 안전점검표(Check List)

### [배달대행사]

#### ■ 주요 점검사항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양호	미흡
1	이륜차 면허증 미소지자는 이륜차 운행을 금지시키고 있는가?		
2	이륜차 운행 전, 이륜차 각부 구조 및 기능(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가?		
3	이륜차 운행에 따른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가?		
4	배달종사자가 타 프로그램 및 다량의 단말기의 사용유무를 확인하고, 운행 중 여러대의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전사항을 주지하고 있는가?		
5	이륜차에 설치된 단말기 거치대의 안전(장착상태)을 확인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가?		
6	승차용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비를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관리하고 있는가?		
7	배달 종사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배달 불가능한 시간 내 배달을 금지하는 등, 배달시간을 적절히 부여하고 있는가?		
8	이륜차 안전운행과 관련하여 배달 종사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9	배달종사자에게 도로교통법 준수 등 불법운전을 하지 않도록 매일 숙지시키고 있는가?		
10	“눈” 또는 “비”가 오는 등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날 무리한 배달업무를 강요하지 않는가?		
11	주기적으로 이륜차 점검 전문기관 등을 통해 안전점검을 받는가?		
12	이륜차 운행 전, 배달 목적지까지 지형, 주행동선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운행 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이 교재를 안전보건공단 승인없이 부분 또는 전부를 복사·복제, 전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 펴낸이

고용노동부	산업예방보상정책국장	김 왕
	산업안전과장	황 종 철
	사무관	김 영 남
	주무관	권 중 화
	전문위원	김 상 현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안전실장	박 상 우
	서비스안전기술부장	박 문 호
	서비스안전기술차장	신 수 환
	서비스안전기술대리	이 정 연

2017-서비스-791

###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가이드라인

- 발 행 일 : 2017년 9월
- 발 행 인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이 영 순
- 발 행 처 :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안전실
- 주 소 : (681-230)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북정동)
- 전 화 : (052) 7030-739
- 디 자 인 : 두드림애드 (070) 4795-4881
- Homepage : <http://www.kosha.or.kr>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